

지방방송국에 대한 정정보도청구소송의 토지관할

Dusseldorf 지방법원 1983. 8. 10 결정

-120355/83-사건

<참조조문>

독일민사소송법 제 21 조

<판결요지>

어떤 방송의 지방방송국은 독일민사소송법 제 21 조의 의미에 있어서의 「지점」의 개념에 속하지 아니한다.

<사실개요>

신청인은 서독라디오방송국(WDR)에 청해서 정정보도를 요청하고 있다.

위 정정보도청구는 「주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」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방송된 주장에 대한 것이었다. 그런데 위 방송프로그램은 서독라디오방송(WDR)의 Dusseldorf 지방국에서 제작되었기 때문에, 위 서독라디오방송국이 Koln 에 소재하고 있기는 하지만, 신청인은 위

정정보도청구의 법적절차를 Dusseldorf 지방법원에 서 친행하길 원하였다. 그러나 이 점에 관해서 Dusseldorf 지방법원은 스스로는 토지관할권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.

<결정이유>

본건에 있어서의 Dusseldorf 지방법원의 토지관할은 독일민사소송법 제 21 조를 준용함으로써 만이 정해질 수 있을 것이다. 그런데 위 규정의 의미 및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면, 서독라디오방송이 Dusseldorf 에 소위 그 지국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Dusseldorf 지방법원에는 그 관할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.

독일민사소송법 제 21 조는, 어떤 지점과 거래상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의 이익을 위하여,그 지점의 영업활동과 관계가 있는 청구권이 문제로 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지점의 소재지까지도 재판적이 있는 것으로 확대하여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.

그리하여 법적으로 독립한 서독방송국의 지방국들을 독일민사소송법의 의미에 있어서 지점으로 취급한다고 할지라도, 그 지방국 자신의 업무에 관계가 되는 소송에 있어서 만은, 서독라디오방송국을 상대로 위 지방국의 소재지에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.

이와 같은 사정은 단지 지역적으로만 방송된 지방국의 프로그램에 관계되는 정정보도청구의 경우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인 것이다. 그리하여, 지방의 편집국이나, 지방국을 소위 「표견지점」(Scheinunterlassung)으로 인정하고 그 결과, 언론기업에 대한 모든 청구권은 위 「표견지점」의 소재지에서 주장될 수 있다(왜냐하면 청구권을 분류하는 것은 일반인에게는 너무 어려운 것이므로)고 하는 Seitz/schmidt/schoner(S.144)의 주장에 당원은 반대의 견해를 가지고 있는 바이다.

그리고 독일민사소송법 제 21 조를 직접 적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위 조문을 그 명문의 규정에 반해서 확대하여 적용하지 않으면 그 청구권의 종류 따라서 토지의 관할권을 확정 시키기가 어려울 것이다. 그리고 그 밖에도 당원의 견해로는 어떤 논설이나 방송프로그램이 본 방송국의 주 편집물에 속하는지, 지방국의 지역 편집물에 속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그렇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.

그리하여 본건에 관하여 보면, 본 방송프로그램은 Dusseldorf 지방국 만에 관련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. 즉 「주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」이라는 프로그램은 위

서독라디오방송국의 전 방송지역에 걸쳐서 방송되었고, 그리하여 그 책임은 위 프로그램을 아무런 비판 없이 방송한 주 지방국에 뿐만 아니라, 위 방송사에 대하여있는 것이다.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해서, 정정보도청구에 대한 토지관할권이 있는 즉 서독라디오방송국이 소재하는 지방의 지방법원만이 배타적으로 토지관할권을 가지는 것이다.